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1.1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1.21.

다. 상정일자 :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2019.1.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가. 폐지이유

본 조례는 마포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된 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함.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조례는 마포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2015년 2월 12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된 바,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지원 재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보조금 결산 시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